

지방계약 자료

▶ 지방계약관련 질의회신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관련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1. 협상에 의한 계약 가능여부 질의 회신

[질의 요지]

- ○○시가 구청사 및 동 주민 센터 청소용역(사업비 677백만 원, 자격조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의거 동법 제7조에 의한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검토하고 있는 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 입찰의 참가자격은 동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했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하는 바, 해당 계약의 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관련법령 등에 따라 1개 등록만으로 계약 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나-3), 8)”에 따라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 적격심사 관련 질의 회신

[질의 요지]

- 입찰참가자격 미충족업체(입찰공고 전 이전 업체가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가 투찰했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제재 사유 중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제재해야 하는지, 이 경우 고의투찰 여부를 발주처에서 증명해야 하는지? 1~4순위 타지역업체 이고 5순위 업체가 최종 낙찰되었다면 1~4순위를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고 나머지 투찰업체도 확인 후 제재해야 하는지?
- 행안안전부예규 제438호 제3장 제4절 “3”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입찰자에게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데 입찰자로부터 적격점수 미달 통보를 받았을 경우 적격심사포기로 같음하고 차순위자로 심사해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적격심사서류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입찰의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면 상대방이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 “3”에 따라 입찰가격 외에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낙찰하한선 미달자)는 탈락사실을 미리 통지하여 서류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고, “4”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바, 이는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적격통과점수 미달을 확인하고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심사를 포기한 자는 동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3. 지방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른 유권해석 질의회신

[질의 요지]

- ☐ 국립대학교,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국립대학교치과병원 등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삭제 2011.9.15 개정, 대통령령 제23134호)의 부칙 제4조(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 적용)에 따른 특별법으로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삭제 2011.9.15 개정, 대통령령 제23134호)의 부칙 제4조(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 적용)에 따라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이 경우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란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해당 법령에 따라 주무부처의 지원 및 감독을 받아 활동하는 법인을 의미하며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등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질의회신

[질의 요지]

- ☐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대행용역 계약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노임 지급기준에 따른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내용]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단순노무용역의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노임단가는 환경부 고시 제2011-147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11.10.11.)에

따라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 구체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소관부처인 환경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자견적 수의계약의 계약체결 가능여부 질의 회신

[질의 요지]

- ☐ 전자견적 수의계약 안내공고에서 1순위 업체의 사업자 업종(도소매 서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개찰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업종의 누락사실을 알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업종등록 소급적용이 유효하다는 사실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세무서의 실수로 등록사항 누락) 해당 업체와 계약체결 가능 여부

[답변 내용]

-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의 “1-나-15)”에 따라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하며,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질의사항인 해당 업체의 업종등록 사항이 견적서 안내공고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미달되었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6. 지역제한 입찰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질의회신

[질의 요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라 해당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인접 시·도 소재업체를 포함하여 지역제한을 할 경우에 (1)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정한 경우 건축 또는 조경 공사업 등록자가 자격을 갖춘 자인지? 아니면 다른 판단기준이 있는지? (2) 지역과 실적을 동시에 제한한 경우 건축공사업 등록자가 10인 이상이면 인접 시·도 소재업체를 포함할 수 없는지, 아니면 입찰참가자격인 면

허·실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가 10인 미만이면 인접 시·도 소재업체를 포함할 수 있는지? (3) 면허보유자는 10인 이상이나 시공경험 만점자가 10인 이하여서 경쟁성이 낮은 경우 인접 시·도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조경공사업 등록자가 10인 이상이면 인접 시·도 소재업체를 포함할 수 없는지, 아니면 시공경험 미달 자는 낙찰확률이 낮으므로 무자격자로 보고, 시공경험 만점자 수가 10인 미만이므로 인접 시·도 소재업체를 포함하여 지역제한입찰로 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 “1”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1) 인접 시·도로 확대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 하향조정을 통해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해당 방법으로 입찰이 가능한 지? (2) 평가방법 하향조정이 가능한 경우라도 세부평가방법을 협의해야 하는지? 또는 조정개요만 협의하면 되는지? (시공경험 만점을 1.7배에서 1.0배로 조정) (3) 발주할 때마다 별개로 협의해야 하는지? 또는 자체 집행(안)을 수립하여 일괄협의를 가능한지?

[답변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이 있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지역에 사업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는 바, 사업이행에 필요한 자격은 동 시행령 제13조의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및 자격요건 등과 제한입찰의 경우 동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제한사항과 제한기준 등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보며, 해당 시·도 또는 인접 시·도 포함으로 제한입찰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목적·성질 및 지역적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바, 공사의 성질·규모·난이도 및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심사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 “1”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동 기준과 달리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7. 장기계속공사에서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 요지]

- ☐ 장기계속공사에서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의 효력 여부

[답변 내용]

-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의 이행은 총 공사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할 것이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백 기간은 총 공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차수별 공사기간을 모두 합하여 총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의 효력여부는 계약의 내용 및 계약의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8. 시설공사 입찰 관련 질의 회신

[질의 요지]

- ☐ 우리시 도시공사가 ○○마을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기계·토목·조경공사를 지역의무공동도급(49%이상) 입찰로 부치면서 ‘입찰참가자격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시공능력평가액이 추정가격의 2배 이상인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여 2개 업체 이하로 제한하고, 대표사 자격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시공참여비율이 많은 자’로 명시한 바, 추정가격이 11,483백만 원인 공사 입찰에 A사와 B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75%: 25%로 참가했으나 시공능력평가액은 A사가 20,421백만 원(144%)이고 B사는 48,045백만 원(339%)인 경우에 공동수급체 대표자(A)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추정가격의 2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분율이 75%이면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자격이 되는지 여부?

[답변 내용]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은 동 운영요령 제2절 “2-가”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동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하는 바, 이 규정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자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동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구성원이 우선적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다른 구성원과 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중에서 입찰공고 등에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 계속비공사의 선금급 반환에 대한 질의 회신

[질의 요지]

- ☐ 계속비 사업에서 당해 연도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정산 여부

[답변 내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3-나에서 계속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 ☐ 동 예규 제2절-5-나에서 선금을 지급한 후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반납 받은 선금잔액을 이월사업에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

된 연도에 계약상대자에게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 ☐ 귀 질의의 경우 계속비 사업으로 해당년도 이행금액(연부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선금을 모두 정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

[질의 요지]

- ☐ 장기계속공사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기성금 및 선금급 공제 기준일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일과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중 타당한 기준일은?

[답변 내용]

- ☐ 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 용역, 물품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로서 증액은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 가능하며,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동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 ☐ 질의의 경우는 기준이 되는 날은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나,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과 지연부분 및 조정신청 전에 지급한 기성금·선금공제액·준공금 등은 물가변동 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부분을 포함하여 물가변동 조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11. 시공 중인 공사가 면허 반납으로 계약 해지시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질의 회신

[질의 요지]

- ☐ 당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중인 업체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반납 한 후 발주기관에서 현재 시공 중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당사는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내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계약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 명백히 객관적인 사유로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의미합니다.
- ☐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판단은 발주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12. 공동수급체 구성원 시공실적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질의 요지]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공사를 포기함에(기성타절)따라 잔여업체가 공사를 완료한 경우 이에 대한 시공실적 인정 범위는?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공사를 포기하고 잔여업체가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공정에 대한 시공실적 인정 범위는?

[답변 내용]

-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40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라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나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 행정안전부 예규 제40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라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실적인정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1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질의회신

[질의 요지]

- ☐ 냉난방기 등의 입찰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5호, 2012.3.22)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3. 신인도 주1) 품질관리 등 신뢰도에 따르면 “1), 2), 3), 4)”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특허·실용신안·의장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 및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는 실용신안등록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바,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인증·특허 등”으로 신인도 점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특허물품으로 계약이행을 해야 하는지? (경미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또한, 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란 권리 전체를 양도받거나 전용실시권을 받은 자도 해당되는 지? 아니면, 최초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해서만 인정되는지?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예, 전용실시권이나 양도 등을 한 특허권자)

[답변 내용]

-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물품 적격심사에 있어서 신인도 평가의 기술인증(특허·인증)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되고 활용되고 포함된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므로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목적·성질·입

찰내용과 특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계약목적물(계약목적·입찰규격을 충족하는 납품가능 물품)에 직접 적용되고 활용되고 포함된 특허·인증 등에 대하여 적용하고, 기술인증 등의 평가는 기술개발 노력에 대한 평가항목이므로 반드시 해당 특허물품으로 계약이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시권 유·무는 관련법령에 따른 특허 등록원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14. 특허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회신

[질의 요지]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사목에 따라 특허물품 구매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품목은 동일하나 사양과 성능이 일부 상이한 특허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대체품·대용품으로 보아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한지 아니면 각 특허물품의 고유성능을 인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사목에 따라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 질의의 경우 해당 계약내용에 비추어 특허물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만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라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나, 유사한 성능의 특허물품이 있고, 이를 사용하더라도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는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15. 신규비목 단가적용에 따른 질의회신

[질의 요지]

- ☐ 공사 현장 소음·진동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초 설계에 가설방음벽을 반영하였으나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추가 방음벽 설치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시공사에 설계변경 실정보고를 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여부

[답변 내용]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공사량의 증감분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에 따라 결정하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같은 절 “1-나”에 따라 결정합니다.
- ☐ 질의의 경우에도 민원 발생과 설계변경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상기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나”의 규정에 따라 협의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 사유 등을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16. 설계변경 여부 질의회신

[질의 요지]

- ☐ 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에게 설계서, 물량내역서의 열람 및 교부여부
- ☐ 총액입찰에서 설계서의 상호 모순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법적 근거

[답변 내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총액입찰 공사의 경우에도 상기 시행령 제74조 및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2-나”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설계변경 여부에 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설계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7. 현장소장 뇌물공여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질의회신

[질의 요지]

- (주)○○은 ○○시 도로확포장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장소장 △△△은 공사감독관에게 위 공사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의 뇌물공여로 법원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부정당제재 처분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장소장 개인의 뇌물공여죄로 업체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지

[답변 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서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받는 대상자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현장소장이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면 사용인 등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18. 입찰참가 기준이 되는 입찰공고일 전일의 판단기준에 관한 질의회신

[질의 요지]

- ☐ ○○청이 발주한 ○○학교 급식소 증축공사의 입찰공고일은 '12. 7. 5.이고 입찰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일은 7. 5.이며, 주소이전 접수일은 7. 4.이고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 란의 기재사항은 7. 4.로 등재되어 있는 바, 입찰자의 영업소재지(본점) 이전 판단일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일만으로 인정해서 '12. 7. 5.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변경사항에 대한 등기소 접수일과 등기일이 서로 다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기록 개설 사유 및 연·월·일 란의 기재사항인 7. 4.을 주된 영업소재지(본점) 이전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있어야 합니다.
- ☐ 동 시행령 제13조·제20조에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2”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 동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의 입찰참가자격 판단은 동 입찰유의서 제2절 “3”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는 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는 동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당시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9.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질의회신

[질의 요지]

- ☐ ○○시가 2012년 5월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용역을 발주하면서 우리 도 적격심사 세

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내용에 침체어구 인양, 인양폐기물 해상운반, 인양폐기물 육상 하역, 어장측량, 어장철거 및 재시설로 명시하고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어구, 어망수거) 이행실적도 인정한다고 공고하여 입찰한 결과 1순위 업체가 ○○군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의 투석, 해적생물(불가사리 제거) 등의 수행 실적으로 유류피해지역 지원 사업(오염어장 환경개선사업) 실적을 제출한 바,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분야별 평가방법에 “**당해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별도로 제시한다.**”고 정한 경우에 해당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제시하지 않은 당해용역의 인정범위에 대해 우리 도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의 인정범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한 경우에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에 정한 ‘○○○도가 시행할 특별관리어장 및 양식어장 정화 정비사업 용역계약’이 당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의미인지, 아니면 발주하려는 용역과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한 명칭, 동일한 사업명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용역의 실적을 당해용역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하므로 발주기관이 해당 용역의 목적·성질, 입찰내용 및 심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 재공고입찰에 관한 질의회신

[질의 요지]

- ○○시가 추진하는 CCTV 회선사업자 선정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2011. 8. 26.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하고 2011. 9. 20. 제안서 평가 결과 A사가 1순위자로 선정되었으나 2011. 11. 18. 2순위자(B사)의 계약체결 금지 가치분신청 인용 및 2011. 12. 28. 본안소송(○○지방법원) 결과 2012. 6. 28. 1심 판결에서 **B사의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청구 → 각하**(무효인 입찰에 기한 제1순위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지위확인(은 법률상 이익이 없음), A사를 제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 → 무효(이 사건 입찰절차는 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무효)로 선고된 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입찰 유의서의 재공고입찰 가능여부? 최초 입찰 이후 관련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99호)이 변경되었다면 재공고 입찰시 관련 규정을 최초 공고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가능 여부?

[답변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나 입찰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입찰은 새로운 입찰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1.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질의회신

[질의 요지]

- ○○공사가 PI 및 차세대통합시스템 마스터 플랜 컨설팅 수행업체 선정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제안서를 기준으로 협상하여 합의문 제3조에 수행범위의 구체화와 추가조건을 명시하여 작성하고 2011. 6. 24. ~ 2012. 1. 23.까지 사업을 진행한 바, 합의문 제2조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제안 설명회, 기타사항들을 용역수행 범위에 포함하고, 제3조 제8항에 As-Is, To-Be 아키텍처 산출물의 경우 제안요청 내용과 제안서 내용에 차이가 있어 제안서 내용에 협의내용(제품목록, 보안정책, 보안구성도/정의서, 보안관계도/기술서)을 추가하여 작성한 후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 종료 후 아키텍처 산출물에 대하여 “합의문 제2조 제1항에 의거 제안요청서 내용을 용역 범위에 포함시켰으므로 제3조 제8항의 협상내용과 함께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산출물이 포함되어 계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합의문의 용역수행 범위에 제안요청서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용역수행 범위의 구체화 및 추가 조건에 세부내용을 합의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 세부내용에 대하여 합의내용을 우선해야 하는지? 아니면 합의내용과 더불어 제안요청서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된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제안요청서에 “산출물 내역은 업무분석 범위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단서조항이 있음)

[답변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8”에 정한 바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기술협상을 실시하고, 가격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된 내용에 따라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지역제한 등의 적용관련 질의회신**[질의 요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지역제한은 기존 “충남, 충북 및 대전광역시” 소재업체로 제한했으나, 세종시 출범에 따라 세종시를 포함하여 제한하는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이외의 사업(일반사업)의 지역제한 범위는 해당 사업의 현장 또는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업체로 제한해야 하므로, ① 공사현장이 세종시인 경우 세종시만 제한할 수 있는지? ② 세종시 이전의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공사현장에 따라 “충남+세종시(부강면 제외)”와 “충북+세종시(부강면에 한함)”로 제한해야 하는지? ③ 세종시 전체를 포함되 공사현장(세종시 부강면 여부)에 따라 충남 또는 충북으로 제한해야 하는지? ④ 세종시와 충남 및 충북으로 제한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역제한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따라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을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이는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3.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 요지]

- ☐ ○○구에서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품 선별작업 후의 잔재쓰레기 수집·운반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용역이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중 ‘주 4)’의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범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

[답변 내용]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용역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고,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동조 제8항에 따라 이행실적·기술능력·사업수행계획·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의성·전문성·기술성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노무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4. 용역계약의 과업내용 변경관련 질의회신

[질의 요지]

- ☐ 도시계획결정승인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건에 대하여 3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하여 총액입찰로 추진한 결과 3개사가 분담하여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나 과업지시서상 수행하도록 되어있는 건축설계부분이 산출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 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을 준용합니다.
- ☐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과업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히 산출내역서 상의 일부 항목이 누락된 사유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25. 「지방계약법령」 적용 여부회신**[질의 요지]**

- ☐ 사립학교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지방계약법령」 적용 여부

[답변 내용]

- ☐ 교육과학기술부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립학교에서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대형공사 등의 범위에 관한 질의회신**[질의 요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의 범위

[답변 내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형공사는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중공사를 의미하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에 따르면 대형공사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이하 “일괄입찰 등”)으로 집행할 공사와 일괄입찰 등의 방법으로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기타공사)로 구분됩니다.

- ☐ 따라서, 300억원 미만의 신규복합공종공사나 300억원 이상의 단일공종공사는 대형공사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27. 차선도색 공사비 감액에 대한 타당성 질의회신

[질의 요지]

- ☐ 계약상대자가 차선도색 공사를 고휘도가 아닌 일반제품으로 시공한 경우에 시공된 일반제품으로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 ☐ 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바,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설계서와 상이한 제품으로 시공하였다면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서대로 시공하도록 시정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당초 설계된 공사를 설계내용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설계변경)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바, 당초 설계서에 반영된 고휘도 제품을 일반제품으로 변경하였다면 설계변경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시공의 적합성 및 설계변경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 요지]

-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대하여

- 1)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차이점 및 개념은?
- 2)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지급대상은 모든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력시장을 통하여 고용된 근로자들도 동 제도 대상인지?
- 3) 간접노무비를 선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킨 취지는?
- 4) 노무비 청구서 총액란에 직접노무비만 적는지 아니면 간접노무비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적는지?

[답변 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제43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제9절 제7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의 내용별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에 대한 답변: 위 예규 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제5정 제2관 제4호에 따르면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이고,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하며,
 -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고,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2)에 대한 답변: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인력시장을 통하여 고용된 근로자도 직접 작업에 종사하여 노동력을 제공할 경우 동 제도의 적용 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3)에 대한 답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적용 대상은 직접노무비만 해당함으로 간접노무비는 선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4)에 대한 답변: 노무비 청구서 내역에는 직접노무비 금액만 기재하시면 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9. 계약관련법령 저촉여부 및 처리방안 질의회신

[질의 요지]

- ○○시가 '12. 6. 18. 관문 조형물 조성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하여 7. 27. 제안서 평가를 하고 8. 24. 협상완료 후 9. 10. 계약체결을 했으나 제안서 내용 중 일부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저촉된다는 관련기관 의견이 있어 사업 추진이 곤란한 사항임. 다만, 제안서 내용 중 일부(미디어 월을 통한 시정홍보 배제 등)를 수정하면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나 제안요청서에 제안서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시공되도록 계획하고 제출된 자료에 허위가 있을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사업수행자는 관계 법률의 저촉으로 인한 모든 피해에 책임을 지도록 명시한 바, 제안서 내용의 법령 저촉에 따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제안서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어 제안서의 내용대로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형태의 과도한 변경이나 예산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법령 저촉사항이 해소될 경우 계약 유지 및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4나”에 따라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물품)를 준공기한(납품기한)까지 완성(납품)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은 동법 시행령 제91조, 동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 및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 “3”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되나, 계약의 해제·해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 및 계약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10-나”에 의하여 협상결과, 지방계약법령과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입찰유 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나, 계약내용의 변경은 발 주기관이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 계약내용,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30. 공사손해보험 가입 및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 요지]

- ☐ 하수관거정비공사에 따른 주택균열 등 피해 우려 민원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가입주체 및 비용부담 주체는?

[답변 내용]

- ☐ 공사손해보험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행정 안전부 예규 제43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제3관 9.공사 손해보험료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게 됩니다.
- ☐ 발주기관에 계약체결 전에 공사손해보험료 가입 여부를 검토하여 예정가격에 계상하 지 않은 계약 건에서 공사손해보험료 가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5조에 따른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현 장 여건 등이 현저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성격·특성·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공사손해보험료 부담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결정하 시기 바랍니다.

